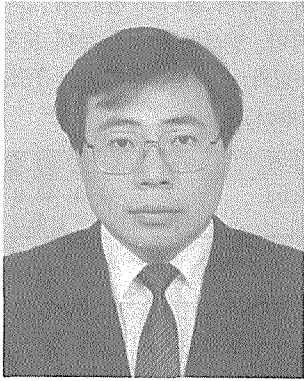


# 수도권 도시가스 가격조정의 배경과 전망



李承宰  
〈동력자원부 가스기획과 행정사무관〉

## 1. 개요

동자부는 최근 국제 원유가 및 환율변동으로 인한 LNG(액화천연가스) 수입가격 상승과 가스공사 및 도시가스회사의 방대한 LNG 공급시설 투자비 조달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LNG 가격을 인상 조정하여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천연가스 가격은 국제에너지 가격변동을 배경으로 석유류 가격의 대폭인상과 시기를 같이하여 조정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국내 물가상승등의 파급효과를 들어 비판의 여론이 있었음에 대하여 가격작업 실무자입장에서 볼때 가격조정의 불가피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있는점을 아쉽게 생각한다.

1차에너지의 92%를 수입에 의존함으로써 연간 125억달러('91년 기준)에 이르는 막대한 외화를 에너지 수입에 지출하고 있는 실정에서 물가안정, 국내산업의 경쟁력 제고등의 정책목적을 위하여 국내 에너지가격의 저가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에너지가격구조의 왜곡과 에너지 과소비 현상을 초래한다는 배경하에 동자부가 금년을 에너지 소비절약의 원년으로 설정하여 획기적인 방향전환을 시도하고 있고 에너지 가격부문이 계속 왜곡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때는 오히려 국민경제 구조상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인식에서 가격인상요인을 언제까지나 미룰 수는 없었다고 볼수 있다.

## 2. LNG 가격현황

### (1) 가격조정 추이

국내에 LNG를 도입하여 보급하게 된 역사는 대단히 짧다. 1983년 인도네시아와 연간 200만톤의 장기도입계약을 체결하여 1986년 최초로 17만톤을 도

입하여 발전용연료로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이듬해인 1987년부터 도시가스용으로도 보급하였다.

70년대에 두차례의 석유파동으로 경제적 혼란을 경험한 우리나라로서는 LNG를 공급초기 최소한의 가격으로 책정함으로써 전세계적으로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고 석유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연료로서 각광받을 수 있는 LNG의 확대보급을 도모하고,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공해문제를 청정·고급연료인 천연가스로 대체함으로써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난 87년 3월 관계기관이 『LNG 공급가격 결정원칙』에 합의하여 원료비는 LNG 도입가를 보상하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공급비용은 방대한 초기투자비가 곧바로 가격에 전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가스공사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87~'91) 자기자본에 대한 보수를 0%로 억제하는 한편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은 당시 재무상태가 가장 건전한 대한도시가스사를 기준으로하여 최소한으로 책정하였다.

그리하여 수도권 도시가스(LNG) 가격은 최초로

〈도시가스(LNG) 가격 및 수요 추이〉

	최 초 (1987. 3)	중 전 (1991. 7)	중 Δ 감 률 (%)
소비자가격(원/㎥)	410.00	217.53	Δ 46.9
도시가스용소비(천톤)	75	824	1,100

(단위 : 원/㎥)

	도 시 가 스 용	비 고
가스공사의 판매가격	158.15	○ 기준유가 : 20\$/B
- 원 료 비	119.12	○ 환 율 : 730원/\$
- 제조·공급비용	39.03	(발전용은 도입가연동)
도시가스사 공급비용	59.38	
소비자 가격 (평균)	217.53	
○ 가 정 용		
- 취 사 용	284.85	
- 난 방 용(개 별)	210.66	
(중 앙)	192.96	○ 중앙난방식아파트
○ 업 무 용		
- 갑 (주방용)	284.85	
- 을 (난방용)	211.34	
(냉방용)	179.64	○ 가스냉방보급확대를 위해 대폭 인하된 요금 신설
○ 산 업 용		
- 10만㎥/월이하	193.99	
- 50만㎥/월이하	185.17	
- 50만㎥/월초과	176.35	○ LPG공장도 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

410원/㎥로 결정되었고 금번 가격조정전까지 그동안 8차에 걸쳐 46.9%를 인하함으로써 도시가스소비가 11배나 증가하게 되었다.

## (2) 종전 LNG가격 체계

LNG 소비자가격은 가스공사의 판매가격(원료비, 공급비용)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을 합산하여 책정하고 용도별로 9개의 요금구조로 구분하였고, 발전용은 LNG 도입가격에 가스공사의 제조·공급비용을 합한 가격으로 가스공사가 직공급하고 있다.

## 3. '92가격조정 배경

### (1) 국제유가 및 환율변동에 따른 원료비 상승

LNG 가격은 국제원유가격에 연동되어 있는데 최근 폐막된 제91차 OPEC(석유수출국기구) 총회 결과가 반영되어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원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환율도 급격히 인상되고 있어 원료비 상승이 불가피 하였다. 한편 가스공사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로 부터 도입하는 LNG 원료비가 '92가스공사 매출원가의 70%에 이르는

5,000억원 상당임에도 불구하고 원료비에서는 도입가 보상수준으로 책정되고 있으며 더욱이 걸프사태 기간중 유가급등으로 인한 '90년이후 원료비 손실액은 240억원에 이르고 있어서 가스공사의 LNG 공급시설 투자비부족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원료비의 추가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한 것이다.

(2) LNG 공급시설 투자비 부족

LNG 사업은 수송·저장·공급등 시설투자비가 막대하게 소요되는 장치산업이고 현재 수도권에만 공급하고 있는 LNG를 전국으로 확대보급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을 기하고자 가스공사가 『LNG전국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연간 4-5천원 규모의 투자비 조달을 감안할때 출자, 석유사업기금, 정책금융등 정부의 지원이 한계가 있고, 부족자금을 회사채발행, 차입등의 고금리 자금을 동원할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2-3년 이내에 급격한 가격인상요인이 발생하므로 LNG 공급시설 투자재원 일부를 가격에 반영하여 투자비의 자체조달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도 부담이 경감되는 것이다.

(3) 도시가스(LNG)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

우리나라는 원료를 전량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고 생산국으로부터도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LNG 선박에 의하여 액화상태로 수송하여야 하기 때문에 원료도입에 막대한 외화를 지불해야하고 국내 제조·공급시설 투자비도 방대하게 소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내 도시가스(LNG)가격은 여름철 취사용만으로 사용할 경우 월 부담액이 4,211원 상당으로 수박 1통 값에도 못미치는 낮은 가격이고 LPG

를 원료로하는 지방도시가스요금의 69%수준에 불과하여 LNG 효용에 비하여 가격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초기투자비가 막대한 장치산업인 도시가스가격이 LNG 도입역사가 20-30년 앞선 日本에 비해서도 37%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직도 상당히 저렴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4. LNG 가격조정 내용

(1) 기본방향

고급연료인 LNG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점을 감안, 지금까지의 보급촉진을 위한 저가 정책에서 적정가격 유지정책으로 전환하고, 가스공사 및 도시가스회사의 방대한 시설 투자비 조달이 어려운점을 고려하여 일부 투자재원을 반영하는 한편 소비자가격이 용도별로 차등화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여 가스공사의 판매가격도 용도별로 차등화 하였다.

(2) 기본전제

- LNG 기준유가 : 19\$/B(수입 LNG 적용 평균 원유가격)
- 환율 : 800원/\$('92년 평균)
- 원가계산기간
  - 가스공사는 가격의 안정성, 투자재원 확보를 고려하여 3년 평균비용을 적용
  - 도시가스회사는 발생원가의 적시반영을 위하여 1년을 적용

(3) 조정내용

- 용도별 소비자가격 조정
  - 가스공사의 판매가격은 평균 9.6%, 소비자가격은 평균 7.0%를 인상하였다. 금번가격 조정시 용도

〈가스연료간 세전가격 수준비교〉

(단위 : 원/10,500 kcal)

	도 시 가 스		LPG	비 고
	수 도 권	지 방		
가정취사용 (대비, %)	284.85 (100)	322 (113)	384.41 (122)	○ LPG : 판매소 가격 ○ 지방도시가스 : 50m <sup>3</sup> /월 이하
가정난방용 (대비, %)	210.66 (100)	312 (148)	348.41 (165)	○ LPG : 판매소 가격 ○ 지방도시가스 : 100m <sup>3</sup> /월 이하
산 업 용 (대비, %)	193.99 (100)	280 (144)	176.35 (91)	○ LPG : 정유사 가격 ○ 지방도시가스 : 15,000m <sup>3</sup> /월 이하

(주) 지방은 대구도시가스(LPG) 기준임

별 소비자가격은 타연료와의 상대적수준, 정책적 요인(가스냉방 보급확대)등을 고려하여 조정하고 소비자가격의 용도별 구조도 일부조정 하였다.

가정용의 명칭을 주택용으로 변경하고 부유층이 주로쓰는 중앙난방용 요금이 서민들이 사용하는 개별 난방용 요금보다 8%정도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어서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아 난방용 요금을 단일화 하였고, 업무용을 일반용으로 주방용을 영업용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서비스업종에서 주로사용하는 영업용가격은 가장높게 책정하였으며, 산업용은 사용량에 따른 체감요금 적용으로 많이 사용할수록 저렴한 가격이 적용되는등 가격체계가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여 단일요금화 하였다.

용도별 소비자가격 인상은 연중 일정하게 사용되는 취사용보다는 동절기에 일시적으로 수요가 집중되어 피크수요를 유발하는 난방용 가격의 인상을 크게 함으로써 난방용 수요의 억제를 통해 계절별 수요격차를 완화함으로써 배관등 설비의 효율제고와 에너지 소비절약을 기하였으며, 냉방용가격은 하계전력 피크수요를 감축하고 가스냉방 보급확대를 기하기 위하여 현행 가격을 거치하였고 산업용 요금은 월 10만<sup>m</sup> 이하 사용요금은 거치하여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 가스공사공급가격의 용도별 차등화

특히 이번에 처음으로 가스공사가 일반 도시가스

회사에 공급하는 도매가격을 용도별로 차등화하게 된 것은 소비자가격이 용도별로 차등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회사가 가스공사로부터 받는 가격은 용도별 구분없이 차등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회사가 가스공사로부터 받는 가격은 용도별 구분없이 동일하기 때문에 단위당 이익폭이 큰 취사용을 위주로 공급하고 아파트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등의 영리추구에 급급함으로써 도시가스사업의 공익성이 확보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여 정부의 정책목적에 부응할 수 있도록 냉방용의 경우에는 소비자 가격은 낮은 수준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되 가스공사의 냉방용 판매가격도 낮게 책정함으로써 수용가 및 도시가스회사의 냉방보급 확대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용도별 수요구성 차이등 도시가스회사의 권역별 여건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손익격차를 일부라도 해소함으로써 자기자본 투자에 상응하는 이익규모를 보장하려는 노력의 시도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 5. 가격조정 영향

이번 수도권 도시가스(LNG) 가격인상으로 당장은 수도권 소비자물가에 0.01%의 상승 영향이 있으나 LNG공급시설 투자자원을 일정부분 자체조달토록 함으로써 고금리의 차입자금에 의한 투자로 향후 급격

〈'92 수도권 LNG 가격조정 내역〉

(단위 : 원/<sup>m</sup>)

		현	행	조	정	조	정	을	(%)
가스공사의 판매가격(평균)		158.15		173.33				9.6	
	- 원료비	119.12		122.46				2.8	
	- 제조·공급비용	39.03		50.87				30.3	
				(발전용포함)					
도시가스사 공급비용		59.38		59.38				거치	
소비자 가격(평균)		217.53		232.71		7.0			가스공사의 판매 가격
주택용	취사용	284.85		295.47		3.7			182.00
	개별난방용	210.66		225.41		7.0			173.33
	중앙난방용	192.96		225.41		16.8			173.33
일반용	영업용	284.85		304.79		7.0			199.33
	난방용	211.34		230.36		9.0			167.47
	냉방용	179.64		179.64		거치			138.66
산업용	10만 <sup>m</sup> /월이하	193.99		193.99		거치			173.33
	50만 <sup>m</sup> /월이하	185.17		193.99		4.8			173.33
	50만 <sup>m</sup> /월초과	176.35		193.99		10.0			173.33

한 가격인상 소지를 완화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지방도시가스(LPG)와의 가격격차를 5% 정도 축소시켜 수도권과 지방의 형평유지에 다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가격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은 하절기에 취사용으로만 월 12m<sup>3</sup>를 사용할 경우 매월 410원씩 부담하던 용구손료 제도가 이번기회에 폐지된다면 오히려 310원이 감소하게 되며(월 4,211원→3,9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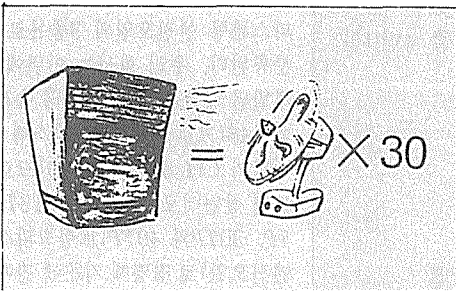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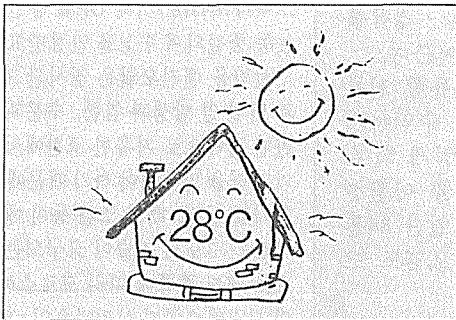
원)동절기에 취사·난방용으로 월 200m<sup>3</sup> 사용하는 국민주택규모(30평 규모)의 수용가당 추가부담은 2,740원(47,775원→50,515원) 정도가 될 것이다.

아무쪼록 관련 수용가들이 이번 LNG 가격조정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에너지 소비절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를 바라며 정부의 정책이 실효를 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으로 다짐해 본다.

생활의 지혜

## 사소한 듯 하지만 그 결실은 큼니다

우리모두 10%만 아껴써도 연간 1조원이 절약됩니다.



### 여름철엔...

- 여름철 적정 실내온도는 26~28°C 입니다.
  - 냉방온도를 1°C 높이면 약10%의 냉방비가 절약됩니다.
  - 실내온도가 밖의 온도보다 5°C 이상 낮으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 에어컨 1대는 선풍기 30대
  - 에어컨의 소비전력은 선풍기의 약30 배로 전력소모가 크므로 사용회수와 시간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노는기쁨 순간이고  
일한보람 오래간다”